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교육부에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8.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한시 정원) ① (생 략)	제42조(한시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교·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2월 28일까지</u>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 ----- ----- ----- ----- <u>2025년 2월 28일</u> ---- ----- ----- ----- -----, ----- ----- ----- --.
③ · ④ (생 략) <u><신 설></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2월 28일까지</u>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023